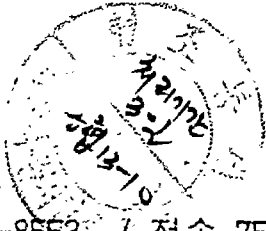


# 서울특별시

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50-8553 / 전승 750-8561

문서번호 공원58210- [1]

시행일자 1993. 2. 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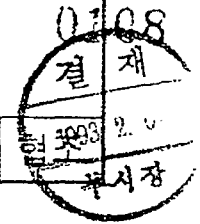
(경유) 제1안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93-28

취급		시 장
보존	영 구	
부 시 장	원 결	
환경녹지국장	국	
공 원 과 장		법무담당관 심사필
공원개발계장		



제목 도시계획시설(월계근린공원)조성계획 결정

1. 도봉 공녹 58210 - 79 ('93. 1. 25)호와 관련입니다.
2. 건설부 고시 제138호('77. 7. 9)로 도시계획시설 (공원) 결정된 월계근린공원에 대하여 조성계획 결정안이 우리시 '92. 제4차 도시공원위원회 및 소위원회(1.2차)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별첨과 같이 지적사항을 반영하고.
3. 일부 시설에 대하여 위치, 규모변경 및 건축면적 정정 재심의 안을 도시공원위원회 제7차 회의 ('92. 12. 29) 심의결과 가결되어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고시코자 합니다.

- 첨부 1) 고시문 (안) 1부.
- 2)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사항 각 1부.
  - 3)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조치내용 1부.
  - 4) 월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각 1부. 끝.

원본대조필

# 서울특별시

(제2안) 고시문 (안) : 별첨



(제 3안)

수신 건설부장관

참조 녹지공원과장

제목 도시계획시설(월계근린공원)조성계획결정 보고

1. 건설부 고시 제138호 ('77. 7. 9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된 월계근린공원에 대하여.

2.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41조 제7항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1) 고시문 사본 1부.

2)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각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장

(제 4 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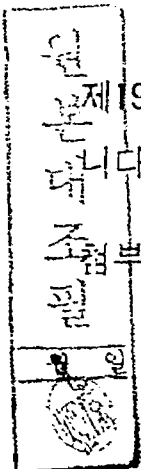
수신 총무처장관

참조 법무담당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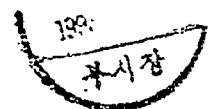
제목 관보게재의뢰

우리시에서 도시계획시설(월계근린공원)조성계획 결정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호('93. 2. )의 내용을 관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시문 사본 및 조서 각 2부. 끝.



## 서울특별시장





(제 5 안)

수신 수신처 참조

참조 공원녹지과장

제목 도시계획시설(월계근린공원)조성계획결정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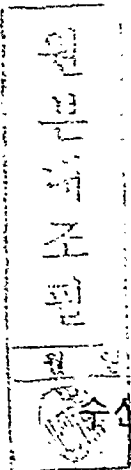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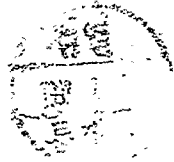
1. 도봉 공녹 58210 - 79('93. 1. 25)호와 관련임.

2. 도시계획시설(월계근린공원) 조성계획결정 요청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7항에 의거 별첨과 같이 조성계획결정 하였고 통보하니 관계도서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할 것이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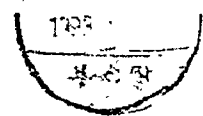
3. 아울러 도봉구청장은 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지적승인 등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 등 도시계획 관련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

첨부 1) 고시문 사본 1부.

2)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각 1부. 끝.



서울특별시



수신처 : 도봉구청장, 노원구청장

제138호	제138호	제138호
담당자	담당자	담당자
<i>(Handwritten initials)</i>	<i>(Handwritten initials)</i>	<i>(Handwritten initials)</i>

고 시 문 (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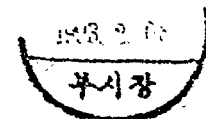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 - 28 호

도시계획시설(월계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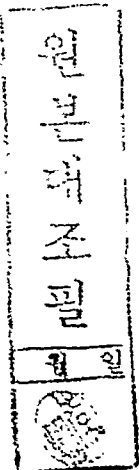
1. 건설부 고시 제138호 ('77.7.9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된 월계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,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.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과 및 도봉구 공원녹지과와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각각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93. 2.

서울특별시장



- 가. 도시계획시설(월계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 조서 : 별첨 시설 조서
- 나. 도시계획시설(월계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 도면 : 서울특별시 공원과 및 도봉구 공원녹지과와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





도시계획시설 (일계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조서 (총괄표)

구분	부지 면적 (M <sup>2</sup> )	시설 면적 (M <sup>2</sup> )	건축물			공작물 (기)	비고
			동수 (동)	바닥면적 (M <sup>2</sup> )	연면적 (M <sup>2</sup> )		
계	1,621,000	124,404	18	6,653.75	12,604.84	131	시설율: 7.67% 건폐율: 0.41%
기 반 시 설	소계	79,110	26,610				
	도로	74,790	22,290				
	광장	4,320	4,320				
조경시설	4,800	2,820				5	
휴양시설	10,661	9,451	7	332.22	332.22	2	
유희시설	1,260	630					
운동시설	94,869	73,601	5	5,140.38	10,253.37		
교양시설	4,950	3,330	1	888.59	1,726.69		
편익시설	8,671	7,332	4	110.56	110.56	1	구석장
관리시설	630	630	1	182	182	123	
녹지및 기타	1,416,049						

도시계획시설 (일계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조서 (총괄표)





시설 조서

구분	시설명	부호	위치	부지면적 (M <sup>2</sup> )	시설면적 (M <sup>2</sup> )	구조	규모	건축물 (M <sup>2</sup> )		공작물 (弄)	비고
								바닥면적	연면적		
계				1,621,000	124,404		18동	6,653.75	12,604.84	131	
기 반 시 설	소계			79,110	26,610						
	도로 진입광장	가	창동 411-7전 외	74,790 1,800	22,290 1,800						
	휴게광장	나	창동 산48-3임 외	2,520	2,520						
조 경 시 설	소계			4,800	2,820					5	
	잔디광장	다	2개소	4,800	2,820						
		다-1	창동 산 27-4임외	(2,100)	(2,100)						
	파고라	다-2	창동 산197-6임외 전 지역	(2,700)	(720)	목재				5	L3m x B4m x H2.7m
휴 양 시 설	소계			10,661	9,451		7동	332.22	332.22	2	
	임계소	라	3개소	5,920	5,670						
		라-1	월계 산 5임	(2,750)	(2,750)						
		라-2	월계 산 82임	(900)	(900)						
		라-3	월계 산 42임 외	(2,270)	(2,020)						
	약수터	마	2개소	180	180						
		마-1	창동 산 200-1임	(90)	(90)						
		마-2	월계 산 5임	(90)	(90)						
	휴게소	1	창동 산 48-3임	(180)	(76)	조적	1동	61.5	61.5		휴게광장내
	노인정	2	창동 산 137-8임	450	450	조적	1동	90.72	90.72		
	성자	3	5개소	4,111	3,151		5동	180	180		
		3-1	창동 산 137-8임	(720)	(720)	목조	(1동)	(36)	(36)		
		3-2	창동 산194-6임외	(225)	(225)	목조	(1동)	(36)	(36)		
		3-3	창동 산189-3임	(196)	(196)	"	(1동)	(36)	(36)		
		3-4	월계 산 5임 외	(900)	(900)	"	(1동)	(36)	(36)		
	3-5	월계 산 82임	(2,070)	(1,110)	"	(1동)	(36)	(36)			

서울특별시 환경부  
 서울특별시 환경부  
 서울특별시 환경부



구분	시설명	부호	위치	부지면적 (M <sup>2</sup> )	시설면적 (M <sup>2</sup> )	구조	규모	건축물 (M <sup>2</sup> )		공작물 (기)	비고	
								바닥면적	연면적			
휴양 시설	야외탁자		간디광장 외 전지역			목재				1	50 개소	
	장의자		전지역			목재				1	121 개소	
유치 시설	소 계			1,260	630							
	어린이 놀이터	바	창동 산197-1임외	1,260	630							
운동 시설	소 계			94,869	73,601		5 동	5,140.38	10,253.37			
	종합운동장	사	창동 산 48-4임외	18,180	18,180							
운동 시설	다목적 운동장	아	월계 산 63-1임외	9,636	9,636							
	실내수영장	4	창동 산200-1임외	5,310	3,960	"	1 동	1,895.98	2,232.96		2 층	
	테니스장	자	창동 산 48-5임외	9,270	4,950	조적	1 동	72	72		7 면	
	게이트볼장	차	창동 산156-1임외	7,450	3,510						배드민턴장 1,350M <sup>2</sup>	
	다이나트랙	카	2 개 소	7,020	3,888							
		카-1	창동 산189-1임외	(3,510)	(3,078)							
		카-2	월계 산 5임 외	(3,510)	(810)							
	스포츠센터	5	창동 산 157임	6,820	4,180	R.C	1 동	1,209.9	4,384.74		지상 3층 지하 1층	
	골프연습장	6	2 개 소	11,579	10,308		2 동	1,362.5	3,563.67			
		6-1	창동 산 177-1임	(6,412)	(5,243)	R.C	(1동)	(630)	(1,260)		2층 L=100m	
		6-2	창동 산126-1임외	(5,167)	(5,065)	"	(1동)	(732.5)	(2,303.67)		3 층	
	배드민턴장	타	8 개 소	15,404	10,789							36 면
		타-1	창동 산 126-1임	(360)	(360)							(2 면)
		타-2	창동 산 189-1임	(900)	(810)							(3 면)
타-3		창동 산 137임 외	(1,440)	(1,440)							(6 면)	
타-4		창동 산 189-3임	(554)	(554)							(2 면)	
타-5		월계 산 8-7임 외	(2,430)	(2,160)							체력단련장 450M <sup>2</sup>	
타-6		월계 산 8-2임 외	(5,400)	(1,145)							(6 면) (5 면)	
타-7		월계 산 5임	(2,520)	(2,520)							(8 면)	
타-8	월계 산 82임	(1,800)	(1,800)							(4 면)		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국  
 도시계획과  
 도시계획팀  
 2012. 12. 2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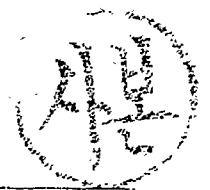


구분	시설명	부호	위치	부지면적 (M <sup>2</sup> )	시설면적 (M <sup>2</sup> )	구조	규모	건축물 (M <sup>2</sup> )		공작물 (기)	비고	
								바닥면적	연면적			
운동 시설	체력단련장	파	5 개소	4,200	4,200						약수터 180 m <sup>2</sup>	
			파-1 월계 산 5임	(720)	(720)							
			파-2 월계 산 82임 외	(720)	(720)							
			파-3 월계 산 82임	(990)	(990)							
			파-4 월계 산 46-2임외	(600)	(600)							
			파-5 월계 산 5 임	(1,170)	(1,170)							
교양 시설	소 계			4,950	3,330		1 동	888.59	1,726.69			
	도서관	7	창동 산137-4임외	4,950	3,330	R.C	1 동	888.59	1,726.69		2-층	
편 익 시 설	소 계			8,671	7,332		4 동	110.56	110.56	1		
	주차장	하		6,691	5,352						172대 (75대)	
		하-1	창동 산48-5임 외	(2,610)	(2,610)							(62대)
		하-2	창동 산177-1 임	(2,768)	(1,687)							(35대)
	전망대	하-3	창동 산126-1 임	(1,313)	(1,055)							
		8	2 개 소	1,980	1,980		2 동	66.56	66.56			
		8-1	창동 산 107-3임	(1,350)	(1,350)	한식 목조	(1동)	(33.28)	(33.28)			
	화강실	8-2	월계 산 68임	(630)	(630)	"	(1동)	(33.28)	(33.28)			
		9	2 개 소	(48)	(48)		2 동	44	44			
		9-1	창동 412-4전	(24)	(24)	R.C	(1동)	(22)	(22)		진입광장내	
	음수전	9-2	창동 산 197-1임	(24)	(24)	"	(1동)	(22)	(22)		놀이터 내	
		테니스장 외 전지역			CONC				1	8 개소		
관 리 지 설	소 계			630	630		1 동	182.00	182.00	123		
	관리사무소	10	창동 산 48-5임	630	630	R.C	1 동	182.00	182.00			
	안내판		진입광장 외 전지역			목재				12		
녹지 및 기타	쓰레기봉		전 지역			목재 철재				1	54 개소	
	조명등		"							110		
				1,416,049								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
 도시계획과  
 도시계획팀  
 2011. 11. 15.

도시계획  
 팀장





도로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연장 (M)	면적 (M <sup>2</sup> )	기능	기점	종점	비고
계					12,858	22,290				
기정	대로	3	38	25	(450)	(11,250)	단지내 도로	창동 산192-1입	창동 산184-3입	
"	"	3	37	25	(140)	(3,150)	"	창동 산 27-10입	창동 산 24-1입	
"	중로	1	78	20	(147)	(2,940)	"	창동 418-3 도	대 1-38	
"	"	1	79	20	(45)	(900)	"	창동 산107-223도	창동 산107-223도	
"	소로	2	1	8	(630)	(4,560)	"	창동 193-1입	창동 산207-1입	
신설	대로	2	74	30	(110)	(3,300)	도시계획 도로	창동 산163-6입	창동 산163-4입	
"	"	3	61	25	(832)	(20,800)	"	창동 산 163-3입	월계 산 67입	
신설	소로	2	2	8	(374)	(2,560)	"	창동 산163-1입	소 3-10	
"	"	2	3	8	(170)	(1,240)	"	월계 산 51입	월계 산 46 입	
"	"	2	4	8	(75)	(600)	"	월계 산 37-1입	월계 산 33-6입	
"	"	2	5	8	(123)	(984)	"	대 1-38	창동 산137-9 입	
"	"	2	6	8	(27)	(216)	"	창동 산137-9 입	소 3-5	
"	"	3	7	6	237	1,422	부진입로	창동 산 48-5입	중 2-2	
"	"	3	8	4	114	456	"	창동 산107-3입	종합운동장	
"	"	3	9	4	106	700	"	중 2-79	골프연습장	주차 20대 포함
"	"	2	10	8	219	1,752	"	대 1-61	월계 산 65-7 입	
"	"	2	11	8	273	2,184	"	대 1-61	다목적 운동장	
"	"	3	12	6	105	630	"	월계 산 3-1 입	월계 산 3-1 입	
"	"	3	13	6	162	972	"	대 1-61	골프연습장	
"	"	3	14	4	72	288	"	골프연습장	창동 산 180 입	
"	산책로	4	1	1.2	216	259	산책로	창동 산 24입	창동 산 27-3입	
"	"	4	2	"	78	94	"	창동 산 31 입	창동 산 31 입	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
 도시계획과  
 도시계획팀  
 2014. 11. 10.

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연장 (M)	면적 (M <sup>2</sup> )	기능	기 점	종 점	비 고
신설	산책로	4	3	1.2	153	184	산책로	창동 산 31 입	창동 산 48-5 입	
"	"	4	4	"	54	65	"	창동 산 51-1 입	창동 산 51-1 입	
"	"	4	5	"	60	72	"	창동 산 51-1 입	산 4-6	
"	"	4	6	"	54	65	"	창동 산 51-1 입	소 3-7	
"	"	4	7	"	138	166	"	창동 산 51-1 입	창동 산107-3 입	
"	"	4	8	"	27	32	"	창동 산107-3 입	소 3-7	
"	"	4	9	"	42	50	"	창동 산126-1 입	소 3-9	
"	"	4	10	"	204	245	"	중 2-79	창동 산126-1 입	
"	"	4	11	"	117	140	"	창동 산126-1 입	창동 산137-9 입	
"	"	4	12	"	51	61	"	창동 산137-9 입	창동 산137-8 입	
"	"	4	13	"	123	148	"	창동 산137-9 입	소 3-5	
"	"	4	14	"	336	403	"	창동 산137-5 입	창동 산137-8 입	
"	"	4	15	"	80	96	"	창동 산137-7 입	산 4-14	
"	"	4	16	"	57	68	"	창동 산137-7 입	산 4-14	
"	"	4	17	"	49	59	"	산 4-14	창동 산137-6입	
"	"	4	18	"	78	94	"	산 4-14	창동 산137-6입	
"	"	4	19	"	78	94	"	창동 산137-6 입	산 4-14	
"	"	4	20	"	79	95	"	산 4-14	도 서 관	
"	"	4	21	"	60	72	"	창동 산137-8 입	대 1-38	
"	"	4	22	"	510	612	"	창동 산 157 입	중 2-78	
"	"	4	23	"	36	43	"	창동 산 157 입	산 4-22	
"	"	4	24	"	369	443	"	창동 산 157 입	창동 산 159 과	
"	"	4	25	"	99	119	"	산 4-22	산 4-24	
"	"	4	26	"	69	83	"	창동 산184-1 입	창동 산189-1 입	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
 도시계획과  
 도시계획팀  
 도시계획팀장

도시계획  
 도시계획과  
 도시계획팀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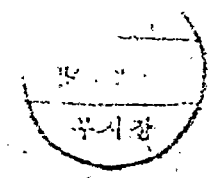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연장 (M)	면적 (M <sup>2</sup> )	기능	기점	종점	비고
신설	산책로	4	27	1.2	283	340	산책로	대 1-38	창동 산189-1 입	
"	"	4	28	"	567	680	"	창동 산 183 입	창동 산189-3 입	
"	"	4	29	"	45	54	"	산 4-30	창동 산 187 입	
"	"	4	30	"	174	209	"	대 1-38	창동 산 192 입	
"	"	4	31	"	90	108	"	창동 산 192 입	창동 산193-1 입	
"	"	4	32	"	265	318	"	소 3-1	창동 산193-1 입	
"	"	4	33	"	381	457	"	실내수영장	창동 산189-3 입	
"	"	4	34	"	123	148	"	창동 산197-1 입	창동 산189-3 입	
"	"	4	35	"	153	184	"	소 3-1	창동 산200-1 입	
"	"	4	36	"	399	479	"	창동 산203-1 입	월계 산 8-2 입	
"	"	4	37	"	180	216	"	창동 산 202 입	창동 산189-3 입	
"	"	4	38	"	36	43	"	창동 산189-3 입	월계 산 6 입	
"	"	4	39	"	630	756	"	월계 912-9 구	월계 산 8-2 입	
"	"	4	40	"	60	72	"	월계 산 6 입	월계 산 8-2 입	
"	"	4	41	"	262	314	"	소 3-10	창동 산189-1 입	
"	"	4	42	"	303	364	"	창동 산189-1 입	창동 산189-3 입	
"	"	4	43	"	387	464	"	소 3-13	다목적 운동장	
"	"	4	44	"	233	340	"	월계 산 5입	산 4-50	
"	"	4	45	"	153	184	"	소 3-13	산 4-44	
"	"	4	46	"	67	80	"	산 4-45	월계 산 5 입	
"	"	4	47	"	42	50	"	산 4-44	월계 산 5 입	
"	"	4	48	"	147	176	"	창동 산177-1 입	월계 산 5 입	
"	"	4	49	"	129	155	"	월계 산 5 입	산 4-43	주식장
"	"	4	50	"	243	292	"	다목적 운동장	월계 산 5 입	

2019년 11월 15일  
 2019.11.15  
 2019.11.15

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연장 (M)	면적 (M <sup>2</sup> )	기능	기 점	총 점	비 고
신설	산책로	4	51	1.2	978	1,174	산책로	월계산 47-1 임	월계산 8-2 임	
"	"	4	52	"	250	300	"	월계산 59 임	산 4-51	
"	"	4	53	"	99	119	"	월계산 42 임	월계산 47-1 임	
"	"	4	54	"	507	608	"	소 3-10	월계산 68 임	
"	"	4	55	"	162	194	"	월계산 74-1 임	월계산 75-3 임	
"	"	4	56	"	150	180	"	월계산 75-1 임	월계산 68 임	
"	"	4	57	"	414	497	"	월계산 84 임	월계산 68 임	
"	"	4	58	"	136	163	"	월계산 80 임	월계산 82 임	
"	"	4	59	"	45	54	"	산 4-60	월계산 82 임	
"	"	4	60	"	210	252	"	월계산 82 임	월계산 80 임	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국  
 도시계획과  
 도시계획팀





第 7 次 都 市 公 園 委 員 會 審 議 議 決 事 項

○. 議決注文 : 다음 案件을 아래와 같이 議決한다.

議案 番號	議 案 名	審 議 內 容			
		可決	否決	條件附	留保
1	월계근린공원 조성 계획 - 재	○			
2	쌍문계근린공원 조성 계획 - 신				○

區 分	委 員 名	署 名
위 원 장	백 상 승	
부위원장	안 봉 원	
위 원	강 정 생	
위 원	박 상 기	
위 원	변 우 혁	
위 원	안 원 태	
위 원	양 병 이	
위 원	이 규 목	
위 원	이 재 큰	
위 원	오 휘 영	
위 원	강 홍 빈	
위 원	김 성 순	
위 원	이 신 영	
위 원	김 동 일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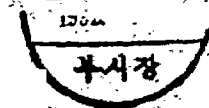
원  
본  
과  
조  
될  
일



### 第 7 次都市公園委員會 審議 結果

○. 日 時 : 1992. 12.29. ( 火 ) 07:00

○. 場 所 : 世宗文化會館 世宗홀 ( 特室 )



○. 參席 委員 : 12 人 ( 外部 8, 內部 4 )

○. 上程 案件 및 審議 結果

議案 番號	議 案 名	審 議 結 果				備 考
		可決	否決	條件附	留保	
1	월계근린공원 조성 계획 - 재심 -	○				
2	쌍문 근린공원 조성 계획 - 신규 -				○	사업주체, 추진방법, 시설배치, 등 공원 조성에 대한 제반 사항이 미비함.

도시공원위원회  
결의  
인



#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지적사항 조치보고

1. 심의 안건명 : 월계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
2. 의결 년월일 : 1992. 8. 22.
3. 내 용

연번	지 적 사 항		조 치 내 용	비 고
	위 치	내 용		
1	종합운동장 주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기존운동장 활용</li> <li>◦ 테니스장, 주차장입지 재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현행운동장 수용</li> <li>◦ 테니스장 및 공용주차장 위치 재조정</li> </ul>	
2	골프연습장 주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형 고려</li> <li>◦ 능선 정상부 보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능선 정상부의 시설 배제</li> <li>◦ 타구거리 축소 및 위치 변경</li> </ul>	
3	테니스 장 주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테니스장 배제</li> <li>◦ 간단한 운동시설 도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근린이용시설-조기체조장, 약수터, 정자, 임칸휴게소 등 위주의 시설 도입</li> </ul>	
4	실내수영장 주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건물의 형태 재고</li> <li>◦ 외부로의 조망 고려</li> <li>◦ 진입로 변경</li> <li>◦ 소운동장 배제 요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건물형태 및 구조 조정</li> <li>◦ 공원경계부 도로에선 진입도로 개설</li> <li>◦ 소운동장 삭제</li> </ul>	
5	옥외수영장 주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대중음식점 부적합</li> <li>◦ 지형여건을 고려</li> <li>◦ 수영장 삭제 요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대중음식점 삭제</li> <li>◦ 수영장 및 부대시설 삭제</li> <li>◦ 테니스장 삭제</li> <li>◦ 기타 소규모시설의 적지 배분</li> </ul>	
6	스포츠센터 주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건물위치 조정</li> <li>◦ 외부에서의 식별성 강화</li> <li>◦ 테니스장 면수 축소</li> <li>◦ 연계동선 확보</li> <li>◦ 노인정 배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건축물 위치변경 및 규모 축소</li> <li>◦ 테니스장 삭제</li> <li>◦ 신규동선의 개설</li> <li>◦ 노인정 삭제</li> </ul>	
7	할터 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할터 삭제 및 기존 배드민턴장 수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반영</li> </ul>	
8	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교회앞 테니스장 배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반영</li> </ul>	

원본 대조필



'92. 第 4 次 都市公園委員會의 2 次 小委員會 審議 議決事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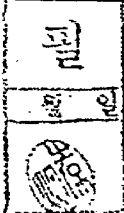
○ 日 時 : 1992. 8. 22. (土) 10:00

○ 場 所 : 環境綠地局長室 및 月溪公園現場

○ 議決注文 : '92. 第 4 次委員會決定에 따른 1 次 受權 小委員會의 改善 및 要求事項을 아래와 같이 確認 審議 決定한다.

議案 番號	公 園 名	審 議 內 容				備 考
		原案可決	條件附	否決	留保	
I	月溪近隣公園 造成計劃 - 新設 -		○			別添審議結果參照

區 分	姓 名	署 名	區 分	姓 名	署 名
副委員長	安 奉 遠		委 員	安 元 泰	
委 員	楊 秉 彥		委 員	姜 正 生	
委 員	康 泓 彬				





# 都市公園委員會 第2次 小委員會 審議結果



- .日 時 : 1992.8.22 (土) 10:00 시
- .場 所 : 環境綠地局長室 및 月溪公園現場
- .審議事項 結果

## 1. 종합운동장 주변

축소된 운동장방향은 이미 형성된대로 계획에 반영하고 스텐드는 반대편으로 설치하되, 법상문제는 입안부서인 구청에서 관계과와 협의하여 처리할것.

## 2. 골프연습장

창동 산177 - 1 골프장은 당초계획대로 시행하되, 창동 산 126 - 1의 골프장은 능선정상을 살리고 타석의 길이와 각도는 자연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조정하며 주차장은 골프장 밑으로 설치할것.

## 3. 테니스장주변

테니스장을 없애고 배드민턴장, 조기체조장등 간단한 운동시설과 임간휴게소를 조성할것.

## 4. 실내 수영장 주변

당초의 건축물면적 범위내에서 지형(능선 등)을 저해하지 않도록 형태를 변경하되, 공원법상 시설물과 부합되게 설치할것.

## 5. 옥외수영장 주변

대중음식점, 부대시설등을 포함한 옥외수영장을 배제하고 산책로와 휴게및 휴양 시설로 조성할것.

## 6. 스포츠센터 주변

당초계획에서 방향을 180도 회전시키고 노인정, 테니스장을 배제하여 주변 시설을 낮출것이며, 공원법상의 시설물만 설치할것.

## 7. 활터

당초계획을 전면 배제한다.

## 8. 기타

교회옆 테니스장은 배제한다. 끝.

연구부조필

9월 1일





'92. 第 4 次 都市公園委員會 小委員會 審議 議決事項

○. 日 時 : 1992. 7. 22. 10:00 -

○. 場 所 : 環境綠地局長室 및 公園現場

○. 議決注文 : 아래 附議 案件을 다음과같이 議決한다.

議案 番號	公 園 名	審 議 內 容				備 考
		原案可決	條件附	否決	留保	
1	月溪近隣公園 造成計劃 - 新設 -					

區 分	姓 名	署 名	區 分	姓 名	署 名
副委員長	安 奉 遠		委 員	安 元 泰	
委 員	楊 秉 彝		委 員	姜 正 生	
委 員	康 泓 彬		부시장		

원본  
조필



# 都市公園委員會 第1次 受權 小委員會 審議結果

○.日 時 : 1992. 7.22 (水) 10:00 - 16:30

○.場 所 : 環境綠地局長室 및 公園現場

○.審議結果

## 1. 종합운동장 주변

- 1) 종합운동장은 기존 운동장을 최대한 이용하는 시설계획이 되도록할것.
- 2) 테니스장, 주차장은 입지여건에 맞게 재조정할것.

## 2. 골프연습장 주변

- 1) 주변지형을 고려하여 재조정할것.

## 3. 스포츠센터 주변

- 1) 스포츠센터는 위치를 바꾸고 테니스장은 면수를 축소하며, 배드민턴장 등 시설을 낮춰 전체공원의 부분별 시설을 초과하지 않도록할것.

## 4. 활터

- 1) 활터는 불특정다수인의 스포츠가 아니며, 그 위치는 기존 배드민턴장이므로 활터 설치계획을 취소할것.

## 5. 수영장 주변

- 1) 대중음식점은 부적합하며, 테니스장, 연못, 주차장, 게이트볼장등을 설치할 계획 농축은 임상이 매우 양호하니 재고하기 바람.
- 2) 배드민턴장, 노인정, 부대시설등은 지형여건을 살려 재조정할것.

## 6. 실내수영장 주변

- 1) 실내수영장은 지형을 고려하여 재배치함이 바람직하겠음.
- 2) 소운동장은 지형변화가 극심할 것으로 판단되니 배제할것.

## 7. 노인정, 게이트볼장 주변

- 1) 경사, 임상등을 고려할때 이 시설설치는 재고가 필요함.

## 8. 테니스장 주변

- 1)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, 정자등의 설치를 배제하고 간단한 운동시설, 임간휴게소 설치를 계획해 볼것.

## 9. 공원남측(노원구)지역시설이 빈약하니 적정한 시설을 검토할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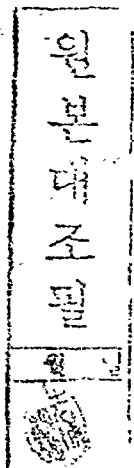
원본대조필

원 인



10. 종합결론

- 1) 수정해야할 사항이 많으니 한번더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결론을 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- 2) 수정 보완해야할 사항이 많으므로 간사책임하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수정 케하여 보완이 끝나는대로 2차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의결함.





# 都市公園委員會審議議決事項

- . 審議日時 : 1992. 7. 21. (화). 08:00
- . 場 所 : 세종문화회관 세종홀
- . 議決注文 : 아래 附議案件을 다음과같이 議決한다.

의안 번호	공 원 명	심 의 내 용			
		가결	조건부	부결	유보
1	월계근린공원 조성계획 -신설-				수소위 천킴임
2	청담 근린공원 조성계획 -변경-		○		
3	어린이 대공원 -자문-		○		
4	방화 제3아동공원 조성계획 -변경-	○			
5	독산11어린이공원 조성계획 -변경-		○		
6	시흥3어린이공원 조성계획 -변경-		○		

구 분	위 원 명	날 인
위원장	백 상 승	
부위원장	안 봉 원	
위 원	강 정 생	
위 원	박 상 기	
위 원	변 유 혁	독일개중
위 원	안 원 태	
위 원	양 병 이	
위 원	이 규 목	
위 원	이 재 근	
위 원	오 휘 영	
위 원	강 흥 빈	불 함
위 원	박 종 옥	불 함
위 원	이 신 영	불 함
위 원	김 동 일	

부시장

원본대조필



## '92. 第4次 都市公園委員會 審議結果

○. 개최일시 : 1992. 7. 21. ( 화 ) 08:00

○. 개최장소 : 세종문화회관 세종홀

○. 참석위원 : 10인 (외부8, 내부2)

의안번호	공 원 명	심 의 내 용			비 고
		가결	조건부	수권소위	
1	월계 근린공원 조성 조성계획 - 신설 -			○	수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답사후, 결정
2	청담 근린공원 조성 조성계획 - 변경 -		○		인근 주민을 위하여 완충기능강화의 조건부
3	어린이 대공원 - 자문 -		○		임시 전시장설치가 5개월간만이라는 조건부
4	방화 제3 아등공원 조성계획 - 변경 -	○			
5	독산제11어린이공원 조성계획 - 변경 -		○		경사지를 활용한 놀이시설 을 검토한다는 조건부
6	시흥제3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- 변경 -		○		노인정을 개방된 팔각정 형으로 건립한다는 조건부

1992. 7. 21

위원회  
 의결  
 기록  
 인